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7

발의연월일: 2020. 6. 19.

발 의 자:이인영·한병도·용혜인

박 정・김경만・허 영

양정숙 • 전혜숙 • 기동민

조오섭 · 안규백 · 최종윤

윤관석 • 양이원영 • 이 재정

정일영 · 이원택 · 황운하

권인숙 · 인재근 의원

(2001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설비,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,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,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현행법은 노약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,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관련 규정들이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의 취지를 고려하여,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각종 장애인 편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각급선거관리위원회(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)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,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·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.
- 나. 후보자 방송광고,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에서 수어 또는 자막 방영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,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70조제6항·제72조2항 및 제82조의2제12항, 제261조제4항).

#### 법률 제 호

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전단 중 "수립·시행할 수 있다"를 "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70조제6항 중 "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"를 "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72조제2항 중 "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"를 "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82조의2제12항 중 "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"를 "수어통역을 하여야한다"로 한다.

제261조제4항 중 "제147조제3항(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"으로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70조제6항(제71조제3항 및 제137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지 아니한 자
- 2. 제72조제2항(제73조제4항·제74조제2항 및 제8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지 아

니한 자

- 3. 제82조의2제12항(제82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을 위반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어통역을 하지 아니한 자
- 4. 제147조제3항(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어·자막의 방영 등에 관한 적용례) 제70조제6항·제72조제2항 및 제82조의2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6條(選擧權行使의 보장) ① (생	第6條(選擧權行使의 보장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(읍·면·	②
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)	
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	
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	
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	
약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	
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	
거나,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	
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	
면제·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	
책을 <u>수립·시행할 수 있다</u> . 이	<u>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</u>
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	
당·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	
한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第70條(放送廣告) ① ~ ⑤ (생	第70條(放送廣告) ① ~ ⑤ (현행
략)	과 같음)
⑥ 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	6
의한 放送廣告에 있어서 聽覺	
障碍選擧人을 위한 수화 또는	<u>수어 또는</u>
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.	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.

- ⑦·⑧ (생 략)
- 第72條(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説 의 放送)①(생 략)
  -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 者 演說의 放送에 있어서는 聽 覺障碍選擧人을 위하여 <u>수화</u>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.
  - ③ ④ (생 략)
- 제82조의2(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) ① ~ ⑪ (생 략)
  - ①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<u>수화통역을 할</u> 수 있다.
  - ③ ⑭ (생 략)
- 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  - ① ~ ③ (생 략)
  - ④ 제147조제3항(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⑦·⑧ (현행과 같음)
第72條(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
의 放送) ① (현행과 같음)
②
수어
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.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82조의2(선거방송토론위원회
주관 대담·토론회) ① ~ ①
(현행과 같음)
12
<u>수</u> 어통역을 하
여야 한다.
①·⑭ (현행과 같음)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행위를 한
<u>.</u>
1. 제70조제6항(제71조제3항 및

	제137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
	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
	하여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
	하지 아니한 자
<u>&lt;신 설&gt;</u>	2. 제72조제2항(제73조제4항·제
	74조제2항 및 제82조제4항에
	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
	다)을 위반하여 수어 또는 자
	막을 방영하지 아니한 자
<u>&lt;신 설&gt;</u>	3. 제82조의2제12항(제82조의3
	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
	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자막방
	송 또는 수어통역을 하지 아
	<u>니한 자</u>
<u>&lt;신 설&gt;</u>	4. 제147조제3항(제148조제4항
	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
	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
	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
	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
⑤ ~ ⑫ (생 략)	⑤ ~ ⑫ (현행과 같음)